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발간사



대한민국에 오신 동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재외동포(F-4)자격을 신설하여 외국국적동포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02년 취업관리제 시행으로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의 취업 활동을 허용하였고, 2007년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취업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2000년 101,000여명에서 2021년 780,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를 위해 제작된 맞춤형 안내서로, 잊어서는 안 되는 주요 신고 의무사항, 자주 위반하게 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부터 외국인등록, 기간연장, 취업 가능 분야 등에 대한 상세 안내까지 외국국적동포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가 동포 여러분의 국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동포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재 유

# CONTENTS

---

<b>I</b>	<b>외국국적동포가 궁금하다!</b> .....	5
	1. 외국국적동포란? .....	6
	2. 외국국적동포 이주사 소개 .....	6
<b>II</b>	<b>입국부터 영주자격 취득까지 한눈에 보는 체류 흐름도</b> .....	9
	1. 입국 후 체류 업무 개요 .....	10
	2. 체류자격 변경 흐름도 .....	10
<b>III</b>	<b>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안내</b> .....	11
	1. 방문취업(H-2) 자격 .....	12
	2. 재외동포(F-4) 자격 .....	15
	3. 동포영주(F-5) 자격 .....	17
<b>IV</b>	<b>동포 가족 체류 절차 안내</b> .....	21
<b>V</b>	<b>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b> .....	25
<b>VI</b>	<b>[Q&amp;A]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b> .....	29
<b>VII</b>	<b>기타 생활정보 안내</b> .....	43
	1. 각종 문의·상담 및 정보열람 안내 .....	44
	2.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관할 안내 .....	46
	3. 전국 동포 체류지원센터 .....	47

---

# PART I

## 외국국적동포가 궁금하다!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외국국적동포가 궁금하다!

## 1. 외국국적동포란?

###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2. 외국국적동포 이주사 소개

우리 동포는 어떤 경로로 국외에 정착하게 된 걸까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지역별 외국국적동포의 이주사를 소개합니다.

(소개 순서 : 가나다순)



### 러시아·CIS 지역

현재에서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러시아·독립국가연합 한인의 이주는 제정러시아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1860년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조약으로 러시아와 조선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접하게 되었고, 1869~1870년에 발생한 이북지역의 대기근은 러시아로의 대규모 이민을 일으켰다.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난 즈음에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10만 명가량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8만여 명이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였고 이 수는 연해주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였다.

연해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로 촉발되었지만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연해주 지역을 독립운동 전진기지로 삼기 위한 이주가 시작되었다. 독립운동가, 지식인들이 고국 땅을 넘어서 이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망명, 독립운동 성격을 띠는 이주는 조선에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가장 큰 규모의 이주는 1917년과 1923년 사이에 발생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연해주지역에 정착하였다.

1937년 스탈린은 일본과의 전쟁을 앞두고 한인이 일본의 첩자역할을 할 것이라는 군사적 우려와 중앙아시아의 낙후된 지역을 이들의 노동력에 의해 개간한다는 경제적 목적 하에 171,781명의 한인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정치 경제적 불안과 부상하는 민족주의를 피해 한인은 남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지역과 우크라이나에 집중 이주하여 ‘고본질’이라고 불리는 계절 농사에 치중하였다.

사할린 지역의 한인은 1860년대 자발적인 농업 이주로 형성되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일제 말기의 강제 징용에 의한 것이었다. 일제 말기 이 지역에 강제징용된 한인은 15만 명 정도에 이르렀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에는 약 4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거주하게 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 미주 지역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은 1903년 1월 일단의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계약노동자로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101명의 한인을 태운 최초의 이민선은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 이후 1905년 일본의 제지로 미국으로의 한인 이민이 중단되기까지 총 7,226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1910년부터 한인 여성이 추가적으로 이주하며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한인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자 또는 도시 주변 일용 노동자로부터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사업 분야(예를 들어 자영업, 쌀농사, 고구마 농사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1903년부터 1915년까지 총 1,087명의 한인들이 본토로 이주하였다.

초기 한인 이민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류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미국으로 건너 간 정치 망명자들이다. 1910년부터 1924년까지 541명가량이 학생 신분으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한인사회의 지적·정치적 지도자로서 부상하였고 해외 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출처: 국가기록원)

## 유럽 지역

유럽으로의 한인 이주는 지역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유럽 지역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 한인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웨덴(2,050명)인데, 6.25전쟁 참전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한국인들이 이주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는 한국 고아 4만여 명이 입양되어 성장함으로써 한인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두 번째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세 번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중부유럽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60년대 독일파견 광부, 간호사의 정착으로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네 번째는 동유럽 지역으로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기 시작하면서 주재상사원의 이주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출처: 국가기록원)

## 중국 지역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재중 한인의 모태는 19세기 중엽부터 형성되었다. 특히 1860년대와 1870년대 사이에 조선에서 재해와 흉년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많은 이재민들이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 비옥한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간도 지역의 한인 인구는 1860년대에 이미 7만 7천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 초기에는 한인이 두만강과 압록강 부근에 정착하였으나 점차 연변과 기타지역으로 확산하여 중국 동북부 지역에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다.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에 만주로 한인 인구가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국 동북부 지역의 한인사회는 더욱 확장되었다. 식민지 정부에 의한 조선 농민 착취와 궁핍화는 많은 농민들을 만주로 이주시켰고, 농민에 비해 그 수는 제한적이지만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 한인 인구는 1910년에 22만 명에 달하였고 1930년에는 6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제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국 동북지역을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한인을 집단으로 이주시켰으며, 그 결과 1940년에는 한인 인구가 1백 4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가 건설되었다.

(출처: 국가기록원)

##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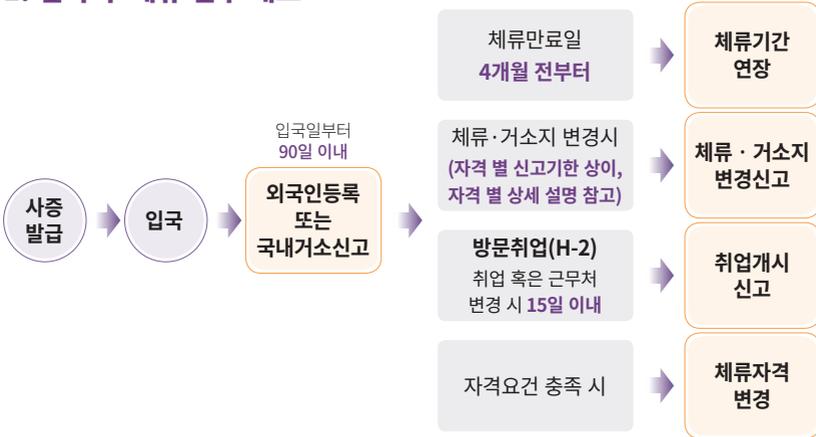
# 입국부터 영주자격 취득까지 한눈에 보는 체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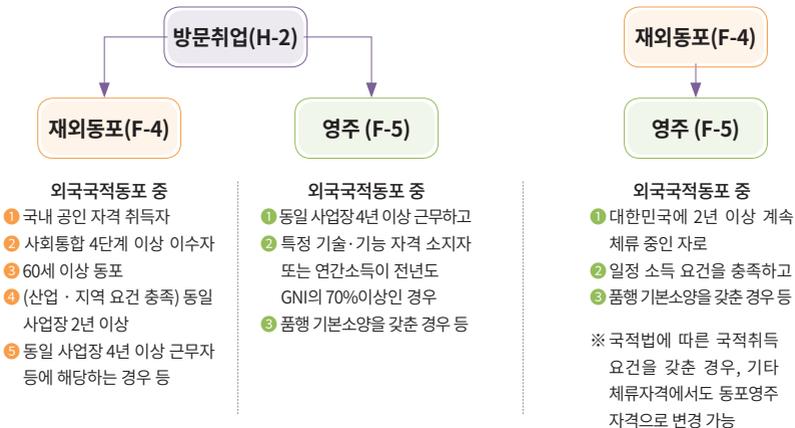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입국부터 영주자격 취득까지 한눈에 보는 체류 흐름도

## 1. 입국 후 체류 업무 개요



## 2. 체류자격 변경 흐름도



※ 자격 별 자격변경 상세요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PART III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안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자격별 체류 정보 안내

## |출입국 방문 신청 안내(방문예약)|

- 전국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이하 ‘출입국·외국인 관서’)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 세부 내용은 지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방문취업(H-2) 자격

### ① 자격 요건

- 대상 :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연령 : 18세 이상

### ②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 정보

- ②-1 외국인 등록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준비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 법무부 지정 병원 발급 건강진단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제출 시 3년 부여)  
※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②-2 체류기간 연장 :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 기간 부여 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출국없이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 준비 서류

- 여권 및 사본, 통합신청서,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
  -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 ※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가)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중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기간연장을 받아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기존 체류기간 연장 때와 동일. 단, 「취업 외 목적,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안내 및 유의사항」 제출 필요
  - **연장기간** : 1회당 1년
- ※ 단,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취업 활동을 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또는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 시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1) 체류기간 내 공항만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출국한 자 중에서  
(2)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인 자
-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 국적국 호구지 및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기출국에 따른 방문취업 (H-2)사증 신청
  - **사증종류** :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 ※ 이 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나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 꼭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사항

성명, 여권정보, 체류지 등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신고방법	제출서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실 입증서류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 인터넷(하이코리아) 신고 - 팩스(☎1577-1346) 신고		
체류지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 인터넷(하이코리아) 신고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재학 사항 (해당자의 경우)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직업 & 연간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③ 취업 활동 안내

제조업, 농축어업, 서비스업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한해 취업이 허용됩니다

✔️ 취업 허용 업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속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1 취업 개시 신고** : 최초 취업개시 혹은 근무처 변경 시 해당 사실을 **15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대상**
    - 방문취업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최초 취업개시 후 근무처를 변경한 방문취업 (H-2) 자격 소지자
  - **신고시기**
    - 최초 취업 개시 ⇒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근무처 변경 ⇒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방법**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방문 혹은 대행신고
    - 인터넷(하이코리아) 신고 또는 팩스(☎1577-1346)신고

▪ 첨부서류

-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권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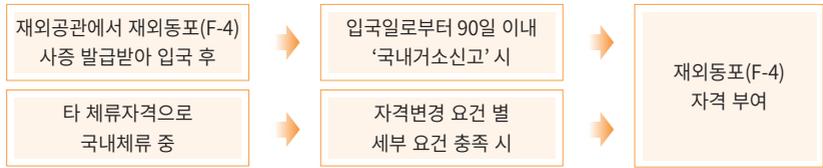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업개시 및 근로개시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 신고한 경우 법무부에도 취업개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

## 2. 재외동포(F-4) 자격

### ① 자격 요건

- 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② 자격 부여 경로



### ③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 정보

- ③-1 국내거소신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거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거소지 입증서류, 수수료
- 직업 및 연간 소득신고서, 재학증명서
- ※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③-2 체류기간 연장: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법을 위반하거나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거소신고증, 거소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수수료
- 직업 및 연간 소득신고서, 재학증명서
  - ※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3-3 체류자격 변경 : 국내체류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자격변경 요건 및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사항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혹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거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거소지 입증서류

- 신고방법: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방문,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및 인터넷(하이코리아) 통해 신고 혹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4 취업활동 범위

재외동포(F-4) 자격 동포는 아래 직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 종사자’ 중 단순노무 직업 41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중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 12개

※ 제한 직업(총 53개) 외 직업으로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춰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취업 제한 직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동하기 쉬운 동포 취업 범위 비교표 |

직업 구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간병인	가능	일부 가능(개인 간병)
요양보호사	가능	제한
육아·가사도우미	가능	일부 가능(가구 내 고용활동)
제조업	일부 제한 (수동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불가)	가능
택배업	제한	일부 가능(택배 상·하차)

### 3. 동포영주(F-5) 자격

#### ① 공통 자격 요건

- (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 (다) 품행이 단정한 사람

#### ② 외국국적동포 대상 자격변경 가능 요건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영주(F-5)자격변경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취업활동 범위

영주(F-5)자격 동포의 경우 취업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 4 자격 취소 요건

영주(F-5)자격 동포는 아래의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과 상이한 경우도 해당함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꼭 확인해야 할 신고 의무사항

성명, 여권정보, 체류지 등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사항	신고방법	제출서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변경사실 입증서류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 인터넷(하이코리아) 신고 - 팩스(☎1577-1346) 신고	
체류지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 인터넷(하이코리아) 신고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재학 사항 (해당자의 경우)	-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고	
직업 & 연간소득		재학증명서 등 재학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 5 영주증 재발급 안내

- 영주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2018. 9. 21. 이전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영주증 재발급 특례

-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영주자격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발급
- 10년 미경과 시에도 재발급 희망할 경우 발급가능하며 재발급 받은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년임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PART IV

# 동포 가족 체류 절차 안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동포 가족 체류 절차 안내

### 1 자격 요건

동포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 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  
\*부모의 경우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의 부모만 해당
-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여기서 잠깐!



-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 자녀의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①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②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부여

### 2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체류 정보

- **2-1 외국인 등록**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제출 서류

- 여권 및 사본,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 **2-2 체류기간 연장허가** : 허가기간은 **1회 최대 2년**이며,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재학증명서 등

### 참고 사항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혼인 자녀 제외)
-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주 체류자격자가 졸업하면 1회에 한하여 1년의 체류기간 부여 가능

- **2-3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족 구성원별 허가요건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동포의 배우자</b> - 재외공관 사증발급이 원칙이며, 체류자격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가됩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시 고시국가 여부, 혼인일자 및 혼인경위, 범법사항, 소득수준, 혼인증명서 진위 여부 등 종합 심사 후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li> <li>▪ <b>동포의 미취학 자녀</b> -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li> <li>▪ <b>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b> - 국내 초·중·고교 재학동포의 부 또는 모는 자국의 출생증명서 등으로 동포와의 가족관계 입증 후 자격변경 허가합니다.</li> </ul>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 **2-4 체류자격 부여**: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  
※ 다만,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추후 본국서류로 동포여부 입증 확인을 위해 다음 연장 시까지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징구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PART V

#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는 주요 법 위반사항

### 사례 ①

Q

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거소지 변경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A

이사 등으로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의 경우 14일, 그 외 체류자격의 등록외국인(동포 포함)은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거소지·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하이코리아\*)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 동법 제98조 제2호, 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100만원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 사례 ②

Q

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는데요. 이 사실을 따로 출입국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A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만 6~18세 미성년자의 국내 초·중·고교 재학여부 및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위 신고사항 중 여권정보의 경우에는 인터넷(하이코리아\*) 혹은 웹팩스 (☎1577-1346)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2호, 동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사례 ③

Q

재외동포(F-4) 자격으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달 전부터 근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점검에 단속되어 내일 출입국사무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니었나요?

A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장소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달업은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직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제94조 제8호  
처분사항: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 사례 ④

Q

저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첫 직장에서 퇴사 후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방문취업(H-2)자격 경우 허용업종에 최초 취업을 개시한 날 또는 근무처를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인터넷(하이코리아\*)으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제3호, 동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사례 ⑤

Q

2007년에 영주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지인들과 대화 중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재발급 대상이 되나요?

A

'18.9.21. 출입국관리법 제33조가 시행됨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의 영주증 발급개시 및 영주(F-5)자격자의 영주증 재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므로 빠른 시일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법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4항, 동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처분사항: 과태료 최대 200만원

사례 6

Q

제 조카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려 하는데,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이 자격변경 시 문제가 될까요?

A

국내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부여가 제한됩니다. 아래 자격변경 제한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인 된 남성의 경우
  - 가. 현역 · 상근예비역 ·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해당자가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는 가능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체류 중 아래의 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살인, 약취, 유인, 강도, 강간, 추행, 단체 등 구성·활동의 죄 등
  - 최근 5년 이내에 상기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합산 금액이 700만 원 이상인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람

관련법령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1호·제2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례 7

Q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급한 불일이 생겨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입국심사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도 될까요?

A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한국 여권 사용 시 여권 부정 사용에 해당되므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94조 제2호  
처분사항 : 범칙금 최대 3,000만원 통고처분

## PART VI

# [Q&A]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Q&amp;A]

##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모음

## 1. 체류 공통 사항

Q1

체류기간 만료일이 곧 다가오는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꼭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만료일 전 연장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장받지 않을 경우 도과 기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사전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체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방문예약(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니 사전예약 후 예약 시간에 맞춰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해주세요.
- 혹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수수료 2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접속 후 회원가입/로그인 → 민원신청 메뉴 →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명(체류기간 연장 등) 선택
-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등록된 **대행 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Q2

다음 주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 예정입니다. 귀국 전 날짜를 맞춰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방문예약이 가능한가요?



- 해외에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예약이 불가하고 입국한 다음 날부터 사전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전자민원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신청 후에 등록증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신청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제외)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가능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록외국인(체류기간 만료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단기체류외국인(체류기간 만료 2일 전까지 신청가능)
  - 재입국허가: 출국일 전 3일까지만 신청가능
- 전자민원 신청 후 접수증 출력력이 가능하며 해당 접수증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발급하는 접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수시로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 후 5일 이내에 교부 일자와 장소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지문 수집 대상자의 경우 지문 수집 날짜와 장소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 기간연장 신청자의 경우 '전자민원확인서'를 출력하여 휴대하게 되며 등록증 후면에 허가사항 기재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날짜 기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변경 신청의 경우 '전자민원 접수증'을 휴대하고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면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4

3년 전 계약한 주소지에 현재도 살고 있던 한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났어요. 체류기간 연장 시 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괜찮습니다. 목적적 계약 갱신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 집 계약서로 체류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신청인 명의의 세금 납부 고지서 또는 2) 숙소제공자 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숙소제공자 집 계약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5

고향 방문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은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Q6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동포 체류자격의 재입국 기간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 체류자격별 동포의 재입국기간은 (체류기간 내에서 출국일로부터)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취업(H-2) 자격 : 1년
  - 영주(F-5) 자격 : 2년
  - 재외동포(F-4) 자격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Q7

혼자 타지에서 외롭기도 하고 생활정보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동포들을 위한 커뮤니티 같은 곳이 있을까요?



- 책자 맨 후단에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 11곳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체류 업무에 관한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이용해 보세요.

## 2. 동포 자격별 - 재외동포(F-4)

Q1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허가 시 제출했던 동포 입증서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을 한국 입국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때 재차 제출해야 하나요?



-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과거 방문취업(H-2) 자격 사증 신청 시 재외공관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했어요.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할 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내야할까요?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체류자격변경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단,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입니다.

Q3

동포의 범위가 4세대 이후로 확대됐는데,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꼭 1세대부터 동포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맞습니다. 1세대부터 동포입증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다만, 초·중·고등학교 재학 동포에 한하여 부모와 가족관계 입증될 경우 1세대와의 관계 입증은 면제하고 있습니다.

✓ 입증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평일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힘들어요. 주말에도 가능한가요?!



- 네.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은 주중 주간반뿐만 아니라, 주중 야간반, 주말반까지 다양한 시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시넷 홈페이지 (www.socinet.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세요

Q5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요건으로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나요?



- 미용, 조리, 세탁 등 기술·기능 분야 510개의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 510개 분야 취득 가능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A 업체에서 2018년 8월 1일 취업개시 신고 후 같은 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이에요. 4년 1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업·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 또는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또는 가정 내)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상기 조건이 아니더라도 방문취업 자격으로서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A업체가 농업·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체이고, 동일 사업장에서 꾸준히 근무했을 경우,
  - 취업개시일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8월 1일 이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 그 외 업체인 경우 4년 뒤인 2022년 8월 1일 이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년 또는 4년 등의 최소기간 요건 계산은 취업개시 신고일로부터 산정되오니 참고하세요.

Q7

‘코로나19 한시적 계절근로’ 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지자체에서 발급한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상 180일 (6개월)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한시적 계절근로’ 자격으로 등록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가 2022년 1월 3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제한대상 여부를 거쳐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Q8

2019년 9월 2일 이전에 재외동포(F-4) 사증을 받고  
입국했어요.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2019년 9월 2일 이전에 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 면제 대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본국에서 개명을 했는데,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하나요?



- 거소신고를 한 동포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구 여권과 신분증 등 개명 관련 입증서류, 수수료(3만원), 사진 등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재외동포(F-4) 사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3. 동포 자격별 - 방문취업(H-2)

Q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보니 제출서류 목록에 ‘건강검진 진단서’와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이 있는데 해당 서류들의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 ▶ H-2 건강검진단서는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병원 이름 및 위치 확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접속 후 뉴스·공지 메뉴 ➔ 공지사항 메뉴 ➔ 검색창에 “(법무부 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키워드로 검색
- ▶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입국 초기에 한국의 기초법·질서, 생활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아래 경로를 통해 편리한 장소·시간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기적응 프로그램 신청방법: 소시넷(www.socinet.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조기적응 프로그램** 메뉴 ➔ **일정조회** 및 **참여신청** ➔ 여권 소지 후 교육 참석

Q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만기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방문취업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출했던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증과 건강검진 진단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 건강검진 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조기적응 프로그램은 이전에 제출한 경우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3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 강제퇴거된 배우자의 만기출국 방문취업 사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으로서 체류기간 내에 완전출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만기출국자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입니다.
- ▶ 하지만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 강제퇴거명령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만기출국 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방문취업(H-2) 자격 체류기간의 만료일(3년)이 다가오는데 한국에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을까요?



- 취업 목적의 경우 고용부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입국일(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 학업 등을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1회에 1년씩 계속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4. 동포 자격별 - 동포영주(F-5)

Q1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 취득 시 순자산 요건은 저축금액만 인정되는 건가요?



-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모두 인정됩니다. 금융자산에는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되며, 실물자산으로는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2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하고 싶은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느라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기준소득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제 소득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 동포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산정기간 기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소득 합산 시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전년도 GNI)의 50% 이상이어야 하나,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50% 이상 요건이 면제되어 가족의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방문취업(H-2) 자격으로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경우(본인의 소득만 인정) 영주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5. 동포 자격별 - 동포의 가족

Q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 한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한국에 출생신고 같은 절차가 있나요?



-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90일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출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병원 출생증명서 제출 시 다음 체류기간연장 신청 이전에 본국에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2

재외동포(F-4) 자격이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나요?



- 동포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됩니다.
- 다만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재외동포(F-4)의 경우 안정적인 체류와 학업 보장을 위해 부모의 방문동거(F-1) 자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Q3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가족들과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거소사실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가족관계 사항에 가족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을까요?



- 재외동포(F-4) 자격 간에는 가족관계 사항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상 동반가족 표기 가능 대상은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부여되는 다음의 체류자격으로 한정됩니다.

[방문동거 표기 대상 체류자격]

- 재외동포(F-4)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 방문취업(H-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 영주(F-5)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
- 영주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

[방문동거자격 표기 가능 대상 예시]

- 본인(F-4 또는 H-2):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1인 경우 → 등록가능
- 본인(F-4 또는 H-2):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F-4 또는 H-2인 경우 → 등록불가

- 또한, 증명서상 동반가족 표출은 신청자에 한하여 등록되며 체류지가 같은 가족구성원만 사실증명서에 표출됩니다. 동반가족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체류지가 다를 경우 사실증명서에는 표출되지 않습니다.

## Q4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제 배우자는 재외동포의 배우자(F-1)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할 텐데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이 미비합니다.



- 동포의 배우자가 동포의 영주자격 취득 전부터 배우자(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인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할 때는 소득요건이 적용 면제됩니다.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이 적용 면제될 수 있습니다.

## 6. 동포 자격별 - 동포의 취업

Q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려는 업무가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일을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된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단순노무 중 41개의 직업과 국내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된 12개의 직업 등 총 53개의 직업입니다.
- 53개 직업 목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있는 [소책자 상세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 전 제한업종 확인을 통해 불법취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 활동 범위가 궁금합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은 요양보호사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취업(H-2)의 경우 취업활동범위에 보건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 외에도 혼동하기 쉬운 동포 취업활동범위 관련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주세요.

직업 구분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간병인	가능	일부 가능*(개인 간병)
요양보호사	가능	제한
육아·가사도우미	가능	일부 가능*(가구 내 고용활동)
제조업	일부 제한(수동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가능*
택배업	제한	일부 가능*(택배 상·하차)

\* 방문취업(H-2) 자격 취업활동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해 취업 가능합니다.

## Q3

**재외동포(F-4) 자격이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면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재외동포(F-4)의 ‘단순노무’ 등 직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직업이 ‘단순노무’ 등에 해당하면 취업이 불가합니다.

## Q4

**재외동포(F-4) 자격이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나요?**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허용 기준에 ‘근로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 재외동포(F-4)에게 취업이 제한된 직업은 총 53개이며, 해당 직업 목록에 대한 안내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소책자 상세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5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했어요.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할까요?**



-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 전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안내에 따라 구직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취업교육 홈페이지 : <http://eps.hrdkorea.or.kr>
- 취업 시 취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PART VII

# 기타 생활정보 안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기타 생활정보 안내

-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단기방문(C-3)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및 동포영주(F-5) 자격 부여 대상 확대 등 동포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 현황을 포함한 모든 생활정보 등을 아래 창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1. 각종 문의·상담 및 정보열람 안내

#### 유선 창구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20개 외국어 상담 가능
  - 운영시간 : 9:00~22:00(18시 이후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상담 가능)
  - 언어 별 단축번호 : (중국어) 국번없이 1345 → 2 + \*
  - (러시아어) 국번없이 1345 → 0 + \* → 12
  - (영어) 국번없이 1345 →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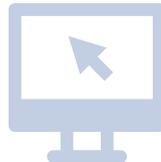
- ※ 1. 휴대전화 연결 시 02(서울 지역번호) + 1345
- 2. 해외에서 이용 시 82(국가번호) + 1345



## 온라인 창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검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최근 뉴스·공지사항 및 중요 이민정책 현황 등 확인 가능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검색엔진(네이버, 구글 등)에서 '하이코리아'로 검색
- 각종 체류 관련 민원신청·신청현황·결과조회부터 체류·귀화 관련 상세 안내 등 확인 가능
- '방문예약' 신청 가능

#### 사전방문예약제 안내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전방문예약제를 시행 중입니다.

-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주세요.
- ☞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SNS 창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카카오톡 채널

- 카카오톡 메신저앱 검색 창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검색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식 페이스북

- 페이스북 검색 창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검색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

인 쇄 2022년 10월

발 행 2022년 10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디자인 · 인쇄 디자인페이지플러스(주) 02-2285-5278